

# 제160차 학교법인국제대학교 이사회 회의록

구 분	이 사	감 사
임원정수	7 인	2 인
재적임원	6 인	2 인
참석임원	6 인	1 인

1. 일 시 : 2020. 3. 30.(월) 오후 6시 (회의소집 통보일 : 2020년 3월 24일)
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46-15 청원빌딩 4층

3. 임원 출·결 사항

- 참석 이사 (6인) : 김방, 김홍경, 박성배, 이해선, 황인하, 황철순
- 참석 감사 (1인) : 임안식
- 결석 이사 (0인) : 없음
- 결석 감사 (1인) : 임재현

4. 안 건

- 가. 정관 개정(안)
- 나. 교원 신규 임용(안)
- 다. 연봉제 합의에 따른 교직원 급여 조정(안)
- 라. 이사 및 상근이사 선임(안)
- 마. 이사장 선임(안)
- 바. 기타사항(안)

5. 회의내용

간 사 : 금번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7조 3항과 4항 및 법인 정관 제30조와 제31조에 의거하여 재적이사 전원이 소집되고 전원이 개최를 요구·동의하여 소집된 이사회임을 설명하고, 재적이사 여섯 분 전원 참석 및 동의하여 성원이 됨을 보고하다.

간 사 : 이사장이 2020. 3. 6.자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현재 이사장이 공석으로 되어있는바, 금일 회의진행 및 신입 이사장의 선출 절차를 위하여 호선으로 이사장직무대행 이사를 선출해야함을 설명하다.

(이사들은 의견을 교환하다.)

(호선 결과 이사가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선출되다.)

< 제1호 안건. 정관 개정(안) >

이사장직무대행자: 제1호 안건인 정관 개정(안)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하여 기획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
(기획처장은 신·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조항별로 설명하고 이사들은 신·구조

<간서명>	황철순	이해선	김방
-------	-----	-----	----

문대비표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다.)

김 방 이사 : 검토결과 정관 개정(안)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다.

박성배 이사 : 제안에 동의하다.

황인하 이사 : 동의에 재청하다.

이사장직무대행자 : 이의 여부 묻다.

이 사 일 동 : 전원 찬성하다.

이사장직무대행자 : 제1호 안건인 정관 개정(안)은 [별첨]의 신규조문 대비표와 같이 개정할 것을 만장 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000

< 제2호 안건. 교원 신규 임용(안) >

이사장직무대행자 : 제2호 교원 신규 임용(안)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하여 교무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
교 무 처 장 : 2020학년도 1학기 신규채용 심사결과 전임교원으로 [별첨]을 모델연기학과 조교수로, [별첨]을 안경광학과 조교수로 2020. 4. 1. ~ 2021. 3.31.까지 신규 임용하는 것임을 설명하다.

이사장직무대행자 : 이사들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하다.  
(이사들은 의견을 교환하다.)

황철순 이사 :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다.

이혜선 이사 : 제안에 동의하다.

김 방 이사 : 동의에 재청하다.

이사장직무대행자 : 이의 여부 묻다.

이 사 일 동 : 전원 동의하다.

이사장직무대행자 : 제2호 안건인 교원 신규 임용(안)은 전임교원으로 [별첨]을 모델연기학과 조교수로, [별첨]을 안경광학과 조교수로 2020. 4. 1. ~ 2021. 3.31.까지 신규 임용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000

< 제3호 안건. 연봉제 합의에 따른 교직원 급여 조정(안) >

이사장직무대행자 : 제3호 안건인 연봉제 합의에 따른 교직원 급여 조정(안)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하여 사무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
사 무 처 장 : 연봉제 합의에 따른 교직원 급여 조정(안)에 대해서 설명하다  
(이사들은 회의자료를 검토하고 질의응답하며,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다.)

황인하 이사 :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다.

박성배 이사 : 제안에 동의하다.

김 방 이사 : 동의에 재청하다.

이사장직무대행자 : 이의 여부 묻다.

이 사 일 동 : 전원 동의하다.

이사장직무대행자 : 제3호 안건인 연봉제 합의에 따른 교직원 급여 조정(안)은 전체 교직원 급여를 3%

<간서명>	황철순	이혜선	김 방
-------	-----	-----	-----

이내에서 인상하고, 과거 호봉제 적용을 받았던 교원 55명 중 합의를 작성한 53명에 대하여 급여일부보전금 지급 및 향후 3년간 급여를 3% 인상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000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에서 보고할 것을 요청하다.

< 제4호 안건. 이사 및 상근이사 선임(안) >

이사장직무대행자 : 제4호 안건인 이사 및 상근이사 선임(안)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하여 법인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
법 인 국 장 : \_\_\_\_\_ 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2020. 3. 6.자로 사임하고 우리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후임 이사로 \_\_\_\_\_ 을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4년간 이사로 선임할 것과, 법인의 내부 사무(법인일반 및 수익)를 통할하고 대내·외적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상근이사로 선임하며, 보수는 법인 수익회계의 총예산 범위 내 1억원의 한도로 책정하는 것임을 설명하다.  
(이사들은 자료를 검토하며 의견을 교환하다.)

박성배 이사 : 학교와 이사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합한 후보라 판단되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다.

이혜선 이사 : 제안에 동의하다.

황인하 이사 : 동의에 재청하다.

이사장직무대행자 : 이의 여부 묻다.

이 사 일 동 : 전원 찬성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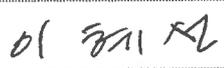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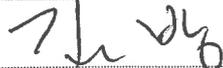
이사장직무대행자 : 제4호 안건 이사 및 상근이사 선임(안)은 2020. 3. 6.자로 이사직을 사임한 \_\_\_\_\_ 이사의 후임 이사로 \_\_\_\_\_ 을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4년간 이사로 선임할 것과, 법인의 내부 사무(법인일반 및 수익)를 통할하고 대내·외적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상근이사로 선임하며, 보수는 법인 수익회계의 총예산 범위 내 1억원의 한도로 책정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000  
(신임 이사 회의장에 입실하여 인사 후 퇴실하다.)

< 제5호 안건. 이사장 선임(안) >

이사장직무대행자 : 제5호 안건인 이사장 선임(안)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하여 법인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
법 인 국 장 : 학교법인국제대학교 \_\_\_\_\_ 이사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2020. 3. 6.자로 사임하여 후임 이사장을 선임해야하는 것을 설명하다.  
(이사들은 후임 이사장 선임에 대하여 논의하다.)

김 방 이사 : 후임이사장으로 신임이사 \_\_\_\_\_ 을 추천하다. 단, 신임이사 \_\_\_\_\_ 의 관할청 승인 이후부터 이사장 취임이 가능하므로 승인전까지 금일 이사장직무대행자인 \_\_\_\_\_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관할청 승인일 이후부터 신임이사 \_\_\_\_\_ 을 이사장으로 추천함을 제안하다.

<간서명>			
-------	---	--	---

(이사들은 의견을 교환하다.)

황철순 이사 : 제안에 동의하다.

황인하 이사 : 동의에 재청하다.

이사장직무대행자 : 이의 여부 묻다.

이 사 일 동 : 전원 찬성하다.

이사장직무대행자 : 제5호 안건 이사장 선임(안)은 : 이사장이 2020. 3. 6.자로 사임하고 후임 이  
사장으로 신임이사 을 선임하되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  
며, 신임이사 에 대한 관할청 승인 전까지는 금일 호선된 이사장직무대행자  
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000

이사장직무대행자 : 다른 의견 여부를 묻다.

이 사 일 동 : 의견 없음.

(임원들간의 호선으로 간서명 자는 김방 이사, 이해선 이사, 황철순 이사로 선정하  
다.)

이사장직무대행자 : 폐회를 선언하다. (18:58)

2020년 3월 30일

학교법인 국제대학교 이사회 이사장 직무대행	김	홍	경	<u>김홍경</u>
	이	사	김	방
	이	사	박	성
	이	사	이	혜
	이	사	황	인
	이	사	황	철
감	사	임	안	식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9조(임용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대학의 보직은 대학의 장이 보하되, 부총장, 경영전략실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<u>학생지원처장, 취업지원처장</u>, 입시홍보처장, 사무처장은 대학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⑤ ~ ⑥ (생략)</p>	<p>제39조(임용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대학의 보직은 대학의 장이 보하되, 부총장, 경영전략실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<u>학생취업처장</u>, 입시홍보처장, 사무처장은 대학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⑤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3조(하부조직) ① 대학에는 경영전략실, 기획처, 교무처, <u>학생지원처, 취업지원처</u>, 입시홍보처, 사무처, 산학협력단을 둔다.</p> <p>② 교무처장·<u>학생지원처장·취업지원처장·입시홍보처장·산학협력단장</u>은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하고, 경영전략실장·기획처장·사무처장은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	<p>제73조(하부조직) ① 대학에는 경영전략실, 기획처, 교무처, <u>학생취업처</u>, 입시홍보처, 사무처, 산학협력단을 둔다.</p> <p>② 교무처장·<u>학생취업처장·입시홍보처장·산학협력단장</u>은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하고, 경영전략실장·기획처장·사무처장은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부 칙</p>
	<p>제1조 (시행일)이 정관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</p>

<간서명>	한정훈	이혜선	김병남
-------	-----	-----	-----